

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941
------	-----

2012. 10. 8.  
재정경제위원회

## I 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8월 17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8월 20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】

-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(2012.10.8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## II . 제안설명의 요지(경제진흥실장 권혁소)

가. 제안이유

- 그 동안 「농지법」에 따라 운영하여 온 ‘주말·체험영농’이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근거한 조례에

따라 ‘도시농업인의 농작물 경작·재배’로 변경·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, 동 조례는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제명 “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함(안 제명).
- 「농지법」에 근거한 ‘주말·체험영농’ 용어를 삭제하고 ‘주말·체험영농’ 문구가 포함된 조항을 변경하여,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변경함(안 제1조부터 제3조 및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).
- 주말·체험영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(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).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남중)

### 가. 조례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과 관련 조례의 제정에 따라 ‘주말·체험영농’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「친환경농

업육성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관계 법령의 정비에 따른 조문 정리

- 그 동안 「농지법」에 근거해 실시해 오던 주말·체험영농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새롭게 제정·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.
- 이는 관계 법령의 제정에 따라 자치법규간 규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수용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또한, 정비되는 조례의 내용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- 이 밖에, 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한 ‘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’는 폐지될 예정인 바, 동 위원회에서 수행한 기능은 필요에 따라 유사 성격의 다른 위원회(도시농업위원회 등)에서 통합·운영할 필요가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#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, 친환경농산물 애용과 가족단위 여가선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주말·체험영농을 육성지원 하고자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”를 “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이라 함은”을 각각 “이란”으로 하며,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하고,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친환경농자재”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

재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”을 “친환경농업”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농업인 및 주말·체험농장운영자, 주말·체험영농인”을 “농업인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영농자재”를 “친환경농자재”로 하고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·유통·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·훈련·기술개발·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시비기준양”을 “살포기준량”으로 하고, “친환경농업 영농자재”를 “친환경농자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”를 “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”로 하고, “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”을 “제13조에 따른 기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”을 “제10조에 따른 기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”을 “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

2호 중 “지하수에 대한 수질”을 “지하수의 수질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타인토지에의 출입)”을 “(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)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환경의 실태조사”를 “제14조에 따른 농업환경의 실태조사”로 하고, “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”를 “관계공무원에게 해당”으로 하며, “타인의 토지”를 “다른 사람의 토지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”를 “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”을 “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”을 “친환경농업”으로 하고, “기술”을 “친환경농업기술”로 하며,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”을 “친환경농업”으로 하고, “농업인, 주말·체험농장운영자, 주말·체험영농인 또는 관계공무원”을 “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, 농업 관련·민간단체, 농업인, 주말·체험농장운영자, 주말·체험영농인”을 “서울특별시, 농업 관련 민간단

체, 농업인”으로 하고, “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”을 “친환경농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”을 “친환경농업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“(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 육성지원)”을“(친환경농업 육성지원)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”을 “친환경농업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·방해”를 “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, 방해”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